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
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
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정옥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일본군‘위안부’ 피해자에게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을 지원하는 등 내용의 법률 개정(법률 제17440호, 공포일 2020. 6.9., 시행일 2020.12.10.)에 따라 동 법에서 규정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구를 정리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 수렴(예정)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심사 예정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법 제4조제1항제4호”를 “법 제4조제1항제5호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비용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에 따른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지원

4.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

6.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비 지원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4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4조제1항제4호”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조제1항제4호”를 “법 제4조제1항제5호”로 한다.

제7조의3제1항 중 “법 제4조제1항제5호”를 “법 제4조제1항제6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원의 내용)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5조(지원의 내용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</u>	3.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비용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에 따른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지원
<u><신 설></u>	4. <u>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</u>
4. <u>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간병인 지원</u>	5. <u>법 제4조제1항제5호</u> ----- --
<u><신 설></u>	6. <u>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제비 지원</u>
5. (생 략)	7. (현행 제5호와 같음)
제6조(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) ① <u>법 제4조제1항제3호</u> 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시금과 월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.	제6조(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) ① <u>법 제4조제1항제4호</u> ----- ----- -----.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2(간병인의 지원기준 등)	제7조의2(간병인의 지원기준 등)

① <u>법 제4조제1항제4호</u>에 따른 간병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한다. 1. 2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 제7조의3(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) ① <u>법 제4조제1항제5 호</u>에 따른 장제비는 장제에 필 요한 금액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 ② · ③ (생 략)	① <u>법 제4조제1항제5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7조의3(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) ① <u>법 제4조제1항제6 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87